

# 송무행정 운영규정

제정 2021.8.10. 규정 제92호

개정 2022.1.17. 규정 제109호

개정 2022.3.11. 규정 제122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1. "소송"이란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형사소송,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제1호에 따른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임직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고문변호사"란 제20조에 따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

## 제 2 장 소송사무

### 제 1 절 소송사무의 수행

**제3조(소송의 주관 등)** ①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모든 소

송사건과 송무업무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총괄·조정한다. <개정 2022.3.11.>

② 소송사건의 수행은 사건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소송의 수행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거나 제기 당한 경우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제소, 응소(應訴), 상소(上訴), 반소(反訴),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조정결정 등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처리방침을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처리방침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소송업무담당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 수행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1.>

④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의 제소, 응소, 심급별 소송 결과 및 소송종결 사항 등을 판결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1.>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사건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
2.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3. 소송의 관할 법원 등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이사장은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해임을 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의 방법 등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2. 공단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 3. 상대방과 담합(談合)한 경우
- 4.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5. 소송수행을 게을리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1.>

-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 3. 지정된 변론기일에서의 출석, 진술
-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⑥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1.>

- 1. 제5항의 소송 진행사항
-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 6. 그 밖에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등)** ① 이사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나 해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는 판결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상소·반소 등)** 소송수행자는 판결선고에 따라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 등과 협의하여 소의 이익 및 승소의 가능성과 공단시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한다. <개정 2022.3.11.>

## 제 2 절 소송확정 후의 조치

**제10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수행자는 소송사건이 승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청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청구
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미회수가 가능하다. <개정 2022.3.11.>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용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단, 이 경우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③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은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1.>

**제11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지급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잘못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을 게을리 하는 등 소송수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상권 행사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해당 임직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6호에 해당하여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반납 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소송수행자 및 당사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및 당사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수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1.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의변제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공단의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단에서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제 3 절 소송비용 등**

**제14조(소송비용의 계상 등)** ①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예산에 한꺼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후 지급할 비용이 계상된 예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따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소송비용 등)** 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등은 심급(審級)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에 소송에 필요한 비용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한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청구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해임된 경우
2. 그 밖에 이사장이 반환청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직무관련사건 임직원에 대한 지원)** ① 이사장은 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업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회사나 직원에 대한 민·형사 고소 또는 고발이 행하여졌다고 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가 유죄 확정을 받은 경우
2. 민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 4 절 소송 등의 일반적 절차

**제17조(서류의 관리)** ①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면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소송관련 서류 등은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 등에 관한 일반적 절차)**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소송 및 소송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3 장 고문변호사

**제19조(고문변호사의 운영)** 이사장은 제20조에 따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20조(직무)** 고문변호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단 관련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2. 공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21조(위촉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가 제2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촉의 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나. 공단의 소송사건 수임 현황 및 소송 실적. 이 경우 소송을 대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이사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위촉기간 중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辭任)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忌避)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공단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공단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대방과 담합(談合)한 경우
  - 다. 그 밖에 소송을 게을리 한 경우
5.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立候補)한 경우
7.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4조(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口頭),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제출하거나 별도의 자료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소송수행자의 포상

**제26조(소송수행자의 포상)** 이사장은 공단 또는 이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이사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의 지정이나 선임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판결을 받은 소송수행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 지급대상 판결)**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공단이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80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공단이나 이사장이 피고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80 이상을 기각(棄却)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단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제29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① 포상금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마다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8조에 따른 판결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대리인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③ 포상금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소송 결과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금액)** ①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만원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만원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5만원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명당 5만원

② 이사장은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5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표창)** 포상금을 지급받은 소송수행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 제 5 장 보 칙

**제32조(사실 확인 등)** ① 이사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소송대리인이나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인의 경우 제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문변호사의 경우 제23조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대상 및 제한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촉을 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소송수행자로 지정되거나 지명된 소송수행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송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이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소송수행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에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는 행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제109호, 2022.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